

(주)나눔자산운용은(이하 “당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와 당사 내부통제기준 제35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에 따라 당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과 관련정책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 ①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하“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 ①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 ③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가) 고유재산의 운용부문과 집합투자재산(자문 및 일임업무 포함)의 운용부문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중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가 부서단위의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고유재산의 운용부문 중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가 부서단위의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거래 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가)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목록지정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예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의 주요 고려사항

-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제“다”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이해상충 유형	대응방안
임직원의 자기매매(주식[비상장포함]) 등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재산상의 편익제공 및 수령행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 확인 (개인 및 회사한도 설정)
당사와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거래금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고유 재산으로 운용하는 행위	운용정보의 교류 금지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자전거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용 (평가 필요시 집합투자평가위원회 개최)
집합투자재산의 정보 제공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투자중개업자 선정 및 배분	당사 선정 기준에 따름
의결권 행사	당사의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수익자의 이해에 반하는 행사 금지

상기의 이해상충 및 대응방안은 주요 유형으로서, 상기 예시 이외에도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철저히 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고객이익 우선

-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나) 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및 관리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